

## 안내문

### 6 NYCRR 파트 232 관련 제안된 변경 사항

뉴욕 주 환경보호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당국)은 6NYCRR 파트 232(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시설)를 폐지하고 퍼클로로에틸렌(perc) 및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시설 모두에 적용되는 수정 및 개칭된 파트 232 규정(드라이클리닝 시설)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된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하위파트를 포함합니다.
  - a. “일반 규정”에 대한 하위파트 232-1
  - b.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장비"에 대한 하위파트 232-2
  - c.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장비"에 대한 하위파트 232-3 이전에 6 NYCRR 파트 212, “일반 절차 배출원”에 따라 규제되었던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기기에 개정된 파트 232 및 아래의 파트 적용이 제안됨. 및
  - d. 분리 적용에 대한 하위파트 232-4
  
2. 하위파트 232-1, "일반 규정": 이 신규 하위파트는 관련 정의, 유출 오염, 고체 및 유해 폐기물 관리, 응급 대응, 모든 드라이클리닝 장비에 대한 허가 및 통지 게시 요건을 통합 및 명시.
  - a. 새 통지 게시 요건이 대체 드라이클리닝 용제와 관련하여 추가됩니다. 이는 perc 드라이클리닝 장비 작동에 대해 이미 의무화된 기존의 통지 게시 요건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3. 하위파트 232-2,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장비":
  - a. perc 드라이클리닝 장비에 대한 요건이 “드라이클리닝 시설에 대한 국가 퍼클로로에틸렌 대기 배출 표준”(40 CFR 파트 63, 하위파트 M)과의 일관성을 위해 수정됩니다. 이러한 수정에는 2005년 12월 21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perc 드라이클리닝 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의 연방 규정과 2020년 12월 21일까지 주거용 건물에서 모든 perc 드라이클리닝 기기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b. 단계적으로 철거되는 장비와 관련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언어는 삭제됩니다.
  - c. 당국은 perc 드라이클리닝 기기 모델에 대한 당국의 인증 프로그램을 이전에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 모델에 대한 제조업체의 필수 준수 보고서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준수 보고서는 제안된 규정의 perc 기기 성능 표준을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대표자가 발행해야 합니다. 제안된 규정이 채택되면, 이전에 당국의 인증을 받은 perc 드라이클리닝 모델 또는 제조업체의 준수 보고서가 발행된 모델만 뉴욕 주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d. perc 배출을 더욱 줄이기 위해, 내부 보조 제어 시스템이 없는 기존의 perc 시스템(3세대 기기)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 e. 본 규정의 드럼 농축 배출 표준의 이행률을 높이고 기존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국은 도어 팬 제어 시스템 설치를 금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어 팬이 설치되었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4세대 기기는 기존의 작동 조건으로 복구된 드라이클리닝 기기만큼 배출량을 줄이지 못합니다.
  - f. 건물 주민 또는 입주자에 대한 노출량이 많을 수 있는 장소에서 연중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주거 및 상업 시설에서 작동 기기 드럼 테스트를 4세대 perc 드라이클리닝 기기에 대해 매월 실시해야 합니다.
  - g. perc 노출로부터 공공의 건강을 지키고 인간 발암 물질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은 향후 모든 perc 드라이클리닝 기기를 금지할 것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공중 보건, 특히 드라이클리닝 시설 직원 및 이러한 시설이 위치한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퍼클로로에틸렌의 사용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h. 2020년 12월 21일까지 공동 주거 시설에서 perc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안된 perc 금지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규정에 부합하고 제조된 지 10년 미만이며 사용 중인 4세대 perc 드라이클리닝 기기를 분리된 새로운 장소로 동일 소유권 하에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4. 하위파트 232-3,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장비":

- a. "석유 드라이클리닝 업체에 대한 성능 표준"(40 CFR 파트 60, 하위파트 JJJ)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변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석유 드라이클리닝 기기와 관련하여 파트 232에 제안된 요건은 하위파트 JJJ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파트 232에 대한 변경은 1982년 12월 14일 이후 설치된 석유 수송 기기 건조기에 적용되는 하위파트 JJJ에 대한 언급만 포함하게 됩니다.
- b. 명확한 규정 요건을 수립하기 위해, 대체 클리닝 용제에 대한 승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대체 용제는 본 하위파트 발효일로부터 백팔십(180)일 이후 드라이클리닝 기기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 c. 휘발성 유기 탄소(VOC) 및/또는 기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당국은 모든 대체 용제 수송 기기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송 기기는 일반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단일 기능 기기(예: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등)로서 기기 간 수송과 관련된 증기를 배출하며 배출 제어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d. 설치된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기기가 제안된 규정의 장비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되도록 하기 위해, 당국은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기기의 설치 및 작동에 대한 장비 표준 및 사양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 e. 드라이클리닝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탈루성 배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은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기기에 대한 누출 검사 및 자가 점검 요건, 작동 및 유지보수 요건, 기록 유지 요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 f.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기기가 개정된 규정의 설계 및 성능 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당국은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기기에 대한 제조업체 장비 테스트 요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 g. 대체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승인된 사양에 부합하고, 사양에 맞지 않은 용제 사용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하며 폐기물을 유해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국은 용제 탱크 저장통에 있는 대체 용제에 대한 인화점 테스트 요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 h. 제안된 변경으로 인해 사업체를 이주하게 된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업체에 받는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은 규정에 부합하며 연식이 10년 미만이고 사용 중인 대체 용제 드라이클리닝 기기의 경우, 동일 소유권 하에서 허용된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의 이전을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 해당 기기는 기타 모든 관련 요건에 부합하고 새로운 또는 수정된 대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5. 하위파트 232-4, "분리 적용":

- a. 이 파트의 특정 조항이 무효화되는 경우, 분리 적용되는 하위파트가 추가되어 이 파트의 나머지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